

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

2022년 3월 29일 이사회 승인 제정
2022년 12월 08일 이사회 승인 개정

회비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“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” (이하 “연합회” 라 한다) 규약 제2조(목적) 및 제3조(사업)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, 회비의 부과 및 징수,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비의 구분) 회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
1. 회원 회비
2. 사무처장협의회 회비
3. 특별회비
4. 회원단체 회비

제3조(회비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회원 회비” 라 함은 연합회 규약 제6조에 의거 가입된 종목단체의 직원에 대한 회비를 말한다.
- ② “사무처장협의회 회비” 라 함은 연합회 규약에 의거 가입된 종목단체 사무처장에 대한 회비를 말한다.
- ③ “특별회비” 라 함은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
- ④ “회원단체 회비” 라 함은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단체에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

제4조(적용의 범위) 회비를 부과하는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원 회비 :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의 전 직원
2. 사무처장협의회 회비 :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의 사무처장
3. 회원단체 회비 :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

제5조(회비납부의 의무) 연합회가 정한 회원, 사무처장 회비는 소속 종목단체에서 본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비의 부과) ① 회원, 사무처장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의 부과 기준표는 “별표 제1호”와 같다.

② 회원, 사무처장, 회원단체 회비는 이사회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회비의 징수방법) ① 회원, 사무처장, 회원단체 회비는 매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당해년도 말까지 회비를 분납할 수 있다.

제8조(회비의 수납) ① 회비의 납부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(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) ① 회계직원은 회비 납부단체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, 회원 및 사무처장 납부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비 미납에 대한 처분의 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연합회 규약 제3장(권리와 의무)에 의거하여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(회비의 관리) ① 회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당 회계년도 종료 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로 귀속한다. 다만,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으로 둘 수 있다.

③ 전항의 기금 또는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.

제11조(회비의 운영) 회비의 운영은 연합회 규약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운영한다.

제12조(상조회 운영) ① 상조회 운영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1. 상조회 운영 적용 대상은 연합회 회비 납부 36개월 이상 회원(사무처장 포함)에 한하되, 본인결혼 및 조의금(부모)의 경우에 한해 1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도 적용 대상으로 한다.

2. 상조비 지급 기준은 회비 규정 “별표 제2호” 와 같다.

제13조(상조비의 구분) 상조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
1. 축의금
2. 조의금
3. 퇴직자전별금

부 칙 (2022. 3.2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12.0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호】

회비 부과 기준표

부과기준		회비(월)		비 고
		~2022'	2023'~	
사무처장협의회		10,000원	10,000원	
회원	사무처장	20,000원	25,000원	
	직원	20,000원	25,000원	
회원단체		-	-	

【별표 2호】

상조비 지급 기준표

구 분		경조금(원)	대상
축의금	본인결혼	300,000	회비납부 12개월 이상
	자녀결혼	300,000	회비납부 36개월 이상
	자녀출산	200,000	회비납부 36개월 이상
조의금	본인	1,000,000	회비납부 36개월 이상
	부모	300,000	회비납부 12개월 이상
	배우자 및 자녀	300,000	회비납부 36개월 이상
퇴직전별금	퇴직자 전별금	12개월 당 100,000	회비납부 36개월 이상